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른 해당자]

1. 공통 제출 서류

- 사회통합 대상자 확인서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부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지원 자격	관련 근거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한부모 가족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차차상위계층) 		교육비지원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법」 제15조 해당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보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추천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에 따라 추천한 학생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객관적 증빙서류(예: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1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관련	혼인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공통 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첫째 자녀부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사관/부사관 자녀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다음 서류목록 중 택 1] 요양결정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서, 유족급여지급 확인서, 산업재해 사망증빙서류, 상병 보상연금 수급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직자녀 (군경, 소방대원, 교원) 		순직확인서(관련 사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관련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 국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 	형제자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원서 접수 일 기준, 전 가족이 연속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또는 사실관계확인서(아동복지시설장 날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행)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

2023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소득분위 8분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분위 경계 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참고1]

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상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나. 유의사항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를 기준으로 함.
- 적용기간 중 보험료 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해서 평균액을 적용

[참고2]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가.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나.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합산
- 2)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다. 산정 및 적용 사례

1)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2)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3) 사례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2천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6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혼합기준 적용
- 3만2천원(부)+2만6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8천원)

이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후원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